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3086호
- 다. 제출일자: 2025. 8. 11.
-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현재 해당 시설은 안정적 운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위탁사무명: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 나. 위탁기간: 3년('25.12.30. ~ '28.12.29.)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위탁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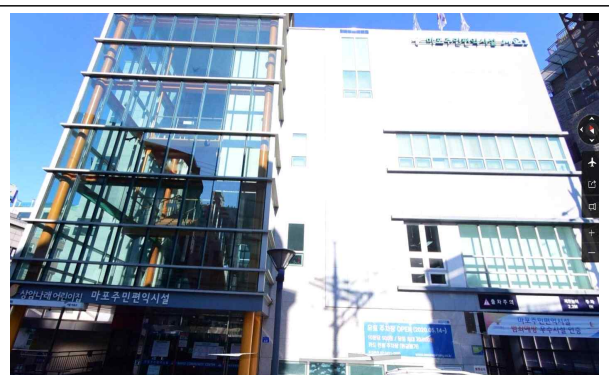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 개요

- 시설명: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 규 모: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4,773 m^2
- 주요시설: 목욕탕, 어린이집, 골프연습실, 헬스장, 독서실 등
- 준공년월: 2009. 12.
- 이용대상: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위치도



외부 전경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5.7.18.)

사. 소요예산: 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징수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마포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 토 의 건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25.12.29.)로 인한 재위탁¹⁾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²⁾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검토

-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09년부터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³⁾.
-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자원회수시설과-7268. '25.7.14.).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마포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없음.

4)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마포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동 사무는 현 위탁 종료일('25년 말)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⁵⁾이 수립되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정⁶⁾으로 심의하였으며, 관련 절차⁷⁾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2) 시설 운영 및 재정 구조

- 동 시설⁸⁾은 준공('09.12) 이후 현재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6차례⁹⁾에 걸쳐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설 운영수익과 마포구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민간위탁금)만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구 분	양천주민편익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	노원주민편익시설 (시립노원청소년센터)
수탁기관	(재)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사)흥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푸른나무청예단
위탁유형	수익창출형(자립형)	수익창출형(자립형)	수익창출형(자립형)	예산지원형
위탁기간	'25.7.1.~'28.6.30.	'23.6.30.~'26.6.29.	'22.12.30.~'25.12.29.	'25.1.1.~'27.12.31.
주관부서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과	청소년정책과

<최근 3년간 수탁자의 수입·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계	마포구 보조금	운영수익 등	市 민간위탁금 (시설개선비)	계	운영비	마포구* 반환금
2024년	3,567	2,230(62.5%)	1,184(33.2%)	152(4.3%)	3,567	2,150(60.3%)	1,417(39.7%)
2023년	3,093	2,092(67.6%)	920(29.7%)	82(2.6%)	3,093	2,006(64.9%)	1,087(35.1%)
2022년	2,536	1,944(76.7%)	529(20.9%)	62(2.5%)	2,536	1,667(65.8%)	868(34.2%)

* 당해연도 운영수익과 집행잔액

- 동 시설은 양천, 강남주민편익시설¹⁰⁾과 달리 운영수익 외에 마포구 보조금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긍정적이나, 설립 초기부터

5)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자원회수시설과-7268, '25.7.14.).

6)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회수시설과)(조직담당관-7384, '25.7.18.).

7)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8) 연면적 4,754㎡(지하 2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

9) '09.12.30 ~ '25.12.29(6회차; '22.12.30.~'25.12.29.(3년)).

10)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수익만으로 운영되고 있음(별도 자치구 보조금 지원 없음).

현재까지 공단이 위탁을 전담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3) 시설 운영 현황

- 2024년 시설 운영 결과¹¹⁾, 수입은 전년 대비 41%, 지출은 3.5% 증가하였는데, 수입 증가는 요금 인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설로 헬스와 생활체육 수입이 각각 63%, 73%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시설 개선공사 완료 및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이용객 수가 증가된 것에 기인할 것임.
- 향후 안정적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요금 체계를 관리하고 지출 항목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24년 마포주민편익시설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계	1,184,810	837,668	347,142	41%	
헬스	611,741	376,356	235,385	63%	일반 57,000원→65,000원. 8,000원 인상 청소년 47,000원→50,000원. 3,000원 인상
골프	130,064	130,978	△914	△1%	일반 69,000원→90,000원. 21,000원 인상 타지역 69,000원→110,000원. 41,000원 인상
생활체육	121,345	70,192	51,153	73%	수업마다 2,000원~4,000원 인상
독서실	24,668	21,070	3,598	17%	
사우나	230,832	194,601	36,231	19%	일반 5,000원→7,000원. 2,000원 인상 타지역 5,000원 신설
기타	66,160	53,471	12,689	24%	

<2024년 마포주민편익시설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비용 구성
합계		1,997,340	1,930,067	67,273	3.5%	
고정비	인건비	725,413	681,921	43,492	6.4%	보수
	동력비	358,833	53,088	305,745	575.9%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간접비	129,486	128,279	1,207	△0.9%	경영지원부, 기획혁신부, 감사부 예산 배분액
변동비	기타 경비	625,317	935,855	△310,538	△33.1%	운영경비, 물품구입 등
	지급수수료	158,291	130,924	27,367	20.9%	위탁관리비

11) 마포주민편익시설 2024년 운영결과 보고서('25.1.).

참 고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예산 및 수입·지출 결산내역
-----	--------------------------------------

- 주민편익시설은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수탁자는 시설 운영 수익으로 운영하고, 우리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민간위탁금)만 지원
 - 단, 마포 주민편익시설의 수탁기관인 마포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는 마포구 보조금에서 편성되고 당해년도 시설 운영 수익 및 집행잔액은 마포구로 반납
 - ※ 시설 운영 수익은 수강료 및 독서실, 사우나 운영 수입 등임

○ 최근 3년간 마포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계	마포구 보조금	운영수익 등	市 민간위탁금 (시설개선비)	계	운영비	마포구 반환금
2024년	3,566,542	2,229,848	1,184,468	152,226	3,566,542	2,149,566	1,416,976
2023년	3,093,431	2,092,162	919,564	81,705	3,093,431	2,006,091	1,087,340
2022년	2,535,589	1,944,081	529,010	62,498	2,535,589	1,667,370	868,219

- ※ 지출액에서 마포구 반환금은 당해연도 운영수익과 집행잔액임
- ※ 2022년 운영수익이 적은 사유는 코로나 영향에 따른 낮은 시설 이용률이 원인임